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
제301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집행부 제출】

검토보고서



2024. 2.

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4. 2. .

도시환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토지정보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2. 2.
- 회부일자: 2024. 2. 2.
- 검토기간: 2024. 2. 2. ~ 2. 6.(5일간)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 일부개정(2023.6.11.)에 따라 지명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확대 및 부위원장 등 정비(안 제3조)
- 간사 및 서기 규정 명확화(안 제7조)
- 불필요한 조문 및 중복된 내용 정비(안 제9조 및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공간정보와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, 제91조의2
 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

- 입법예고(2023. 12. 21. ~ 2024. 1. 10.): 의견없음
- 행정규제 심사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조례·규칙 심의결과: 원안 가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“같은법 시행령 제88조”에서 “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”로 개정하였고,
 - 안 제3조에서는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“7명”에서 “10명”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“3명 이상”에서 “6명 이내”로 하며, 부위원장은 “국장”에서 “부서장”으로 개정하였고,
 -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“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지명한다.”를 “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.”로 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 및 제9조, 제15조는 중복 또는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였음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, 관련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령 제88조” 를 “시행령 제88조의2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 중 “7명” 을 “10명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” 를 “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장” 을 “부서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지명업무를 담당하는” 을 “심의안전 소관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.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명과 시설물 등의” 를
“지명의”로, “제3호에 따른 시설물 등에 대하여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” 를
“해당 안건의 관리주체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<u>시행령 제88조</u>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7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<u>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</u>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<u>국장</u>이 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<u>지명업무를 담당하는</u>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제7조(간사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</u> 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지명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시행령 제88조</u></p> <p>의 2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3조(구성) ① -----</p> <p>----- <u>10명</u></p> <p>-----.</p> <p>- <u>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</u> -----.</p> <p>② -----, -----</p> <p>----- <u>부서장</u></p> <p>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심의안건 소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</u>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.</p>

제9조(심의안건 회부) 지명업무 담당
부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
따라 지명과 시설물 등의 제정, 변
경,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
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
심의안건을 회부하여야 하며, 제3
호에 따른 시설물 등에 대하여 그
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미리 각 호의
서류를 갖추어 심의안건과 함께
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
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
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
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심의안건 회부) -----
----- 지명의-----

-----, 해당
안건의 관리주체는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【관 계 법령】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)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- 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1조의2(지명의 결정) ①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고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지명을 결정(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·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·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